

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 및  
일반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에 대한 의견청취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54
----------	-----

2014년 12월 17일  
환경수자원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4년 10월 30일, 서울특별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11월 5일

다. 상정일자 :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 
(2014년 12월 17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의거 신·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,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은 용량을 기준으로 사용 및 대부요율을 산정 공고하되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2013년, 2014년도 태양광 발전시설의 임대요율을 연간 25,000원/kW으로 산정·공고한 바 있음.

- 현재 전력거래시장에서 SMP, REC가격 하락과 특히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은행용자시 담보제공의 어려움, REC현물거래시장에서의 계약체결률 저하 등의 현실을 반영하여 대부요율을 조정하고자 함.
- 이를 위하여 서울시는 2015년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및 대부요율을 산정하고 공고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.

## 나. 주요골자

### 1) 추진경과

-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: '13.5.16
- 2013년, 2014년 대부요율 산정 용역 수행 : '13.8.26 ~ '13.9.10
  - 수행결과 : 적정 임대요율로 연간 24,500원/*kW*·년 제시
- 2013년, 2014년 태양광 대부요율 공고 : '13.12.24
  - 연간 25,000원/*kW*·년으로 산정 공고
- 2015년 대부요율 산정 용역 수행 : '14.9.20 ~ '14.10.21
  - 수행기관 : 재단법인 에너지경제연구원
  - 수행결과 : 100*kW* 초과는 23,293원/*kW*·년,  
100*kW* 이하는 19,816원/*kW*·년 제시

### 2)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(안)

- 적용대상 :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재산 및 일반 재산을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

○ 요율산정(안)

구 분		1안	2안
적용기간		2015년	2015년
대부요율 (단위 kW·년)	100kW 초과	25,000원	23,293원
	100kW 이하	20,000원	19,816원

※ 설비용량(kW)은 발전사업 사용전검사확인증 상의 발전설비 용량으로 함

3) 우리시 의견 : 제1안

- 2015년은 은행용자 시 담보제공의 어려움과 REC현물거래시장에서 계약체결률 저하 등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용량에 따라 대부요율 구분.
- 용역결과 100kW 초과는 23,293원으로 제시되었으나 기술발전에 따른 설치비 하락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하여 2014년 대부요율인 25,000원을 적용하고, 100kW 이하는 19,816원을 제시하여 20,000원으로 조정.
- 따라서 2014년 대부요율을 그대로 유지하되,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사업수익을 고려해 100kW 이하에 대하여만 20,000원으로 적용하는 1안을 우리시 안으로 제시함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6조(국유재산·

공유재산의 임대 등)

- 「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」 제25조(행정 및 세제·재정상의 조치 등), 제25조의2(의견청취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#### 4. 제안배경

- 태양광 발전시설은 타 에너지에 비하여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고 생산되는 전력량은 설치 장소의 재산 가치와 관계없이 일조량에 좌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,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용 및 대부요율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함.
- 이에 서울시 의회에서는 「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」를 개정하여 시 소유 공공부지나 건물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면적과 공시지가가 아닌 설치용량을 기준으로 사용 및 대부요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.
- 본 의견청취안은 연구용역을 통해 산정된 사용 및 대부요율을 근거로 하여 서울시가 제출한 사용 및 대부요율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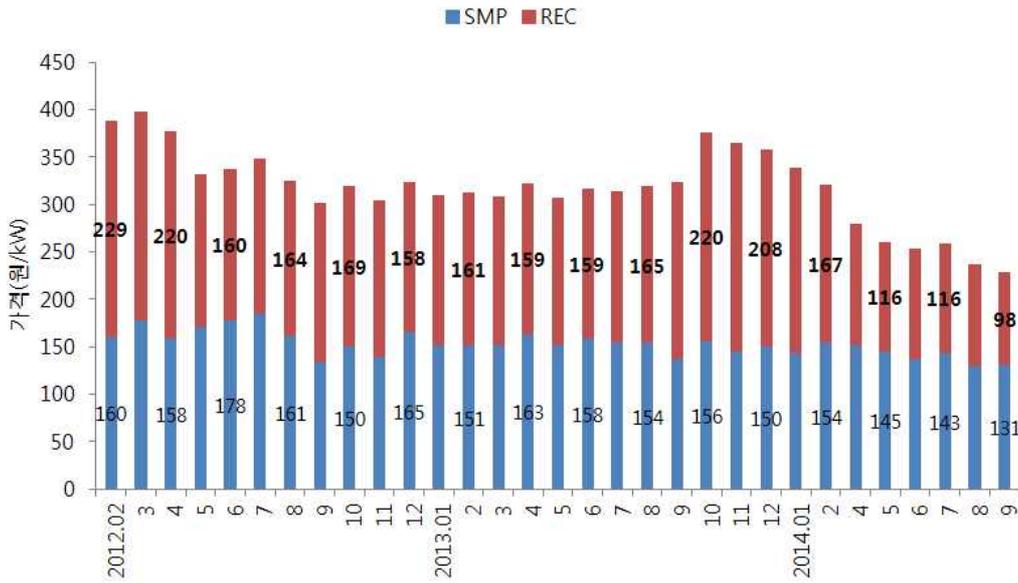
## 5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영배)

- 「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」 제25조제4항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용 및 대부요율을 설치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<sup>1)</sup>.
- 서울시는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사용 및 대부요율을 25,000원/kW·년을 적용하고 있음.
- 현재 전력거래시장에서는 SMP<sup>2)</sup>, REC<sup>3)</sup>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며, 특히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은행융자 신청시 담보제공의 어려움, REC 현물거래시장에서의 계약 체결률 저하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.
- 본 의견청취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10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연간 대부요율을 현행 25,000원/kW에서 20,000원/kW으로 인하하고자 하는 것임.

구 분		1안	2안
적용기간		2015년	2015년
대부요율 (단위 kW·년)	100kW 초과	25,000원	23,293원
	100kW 이하	20,000원	19,816원

- 
- 1) 본 조례는 서울시 공공부지, 건물옥상 등에 적용할 수 있지만, 학교건물의 경우는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 의해 별도로 적용을 받아야 함.
  - 2) 계통한계가격(System Marginal Price ; SMP)은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한전에 공급하여 얻는 수익으로 2014년 9월 평균가격은 142원/kW 임
  - 3)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(Renewable Energy Certificate ; REC) 가격은 태양광발전에서 또 하나의 판매 수익금으로 정부가 13개 발전소들에게 일정량의 전기를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"의무할당제(RPS)"의 기본단위로 2014년도 평균가격이 116원/kW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임

-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얻는 수익은 계통한계가격(SMP)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(REC)가격으로 나눌 수 있는데, REC가격은 지난 2013년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음.



〈그림 1〉 태양광 발전 관련 SMP와 REC 가격 동향

- 서울시에서는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는 소규모(100kW 이하)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기금에서 「서울형 햇빛발전지원사업」 보조금을 50원/kW에서 100원/kW으로 인상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 바 있음<sup>4)</sup>.
- 본 의견청취안에 따라 대부요율이 20,000원/kW으로 될 경우 1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에서는 대부료를 연간 50만원 절감할 수 있어 경영수지 개선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.

4) 100kW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, 금년도의 경우 대략 584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으나, 2015년도에는 1,168만원을 지급하여 경영수지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임.

6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 동의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에 대한 의견청취안

의안 번호	15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4년 10월 30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의거 신·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,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은 용량을 기준으로 사용 및 대부요율을 산정 공고하되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.
- 나. 이에 따라 2013년, 2014년도 태양광 발전시설의 임대요율을 연간 25,000원/kW으로 산정·공고한 바 있음.
- 다. 현재 전력거래시장에서 SMP, REC가격 하락과 특히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은행융자시 담보제공의 어려움, REC현물거래 시장에서의 계약체결률 저하 등의 현실을 반영하여 대부요율을 조정하고자 함.
- 라. 이를 위하여 서울시는 2015년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및 대부요율을 산정하고 공고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추진경과

- 1)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: '13.5.16
- 2) 2013년, 2014년 대부요금 산정 용역 수행 : '13.8.26 ~ '13.9.10
  - 수행결과 : 적정 임대요금으로 연간 24,500원/*kW*·년 제시
- 3) 2013년, 2014년 태양광 대부요금 공고 : '13.12.24
  - 연간 25,000원/*kW*·년으로 산정 공고
- 4) 2015년 대부요금 산정 용역 수행 : '14.9.20 ~ '14.10.21
  - 수행기관 : 재단법인 에너지경제연구원
  - 수행결과 : 100*kW* 초과는 23,293원/*kW*·년,  
100*kW* 이하는 19,816원/*kW*·년 제시

### 나.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 및 대부요금(안)

- 1) 적용대상 :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
- 2) 요금산정(안)

구 분		1안	2안
적용기간		2015년	2015년
대부요금 (단위 <i>kW</i> ·년)	100 <i>kW</i> 초과	25,000원	23,293원
	100 <i>kW</i> 이하	20,000원	19,816원

※ 설비용량(*kW*)은 발전사업 사용전검사확인증 상의 발전설비 용량으로 함

### 3) 우리시 의견 : 제1안

- 2015년은 은행용자 시 담보제공의 어려움과 REC현물거래 시장에서 계약체결률 저하 등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용량에 따라 대부요율 구분
- 용역결과 100kW 초과는 23,293원으로 제시되었으나 기술발전 등에 따른 설치비 하락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하여 2014년 대부요율인 25,000원을 적용하고, 100kW 이하는 19,816원을 제시하여 20,000원으로 조정
- 따라서 2014년 대부요율을 그대로 유지하되,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사업수익을 고려해 100kW 이하에 대하여만 20,000원으로 적용하는 1안을 우리시 안으로 제시함.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#### 1)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6조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
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수의 계약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"임대"라 한다)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

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,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,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

## 2)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(행정 및 세제·재정상의 조치 등)

-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신·재생에너지 등의 개발·이용·보급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세제·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신·재생에너지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·사업자·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조사·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·기술의 제공이나 설치·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세제·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재정상의 지원은 「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.

④ 시장은 신·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. 다만,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한다.

3)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의2(의견청취) 시장은 제25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사용 및 대부요율을 산정 공고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녹색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김수정(☎ 2133-3565)